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6402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1. 15.

판결 선고2015. 1.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102,977원과 그중 496,728,111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C 사이에 2013.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보증한도 495,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6.(이후 2014. 6. 26.로 변경됨)]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1. 7. 폐업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1. 24. 중소기업은행에 498,996,684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268,573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1,694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373,172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바. 피고 C는 2013. 5. 31.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30.,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사. 이후 피고 B는 2013. 12. 12.경 피고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0원(계약금, 중도금 없음, 잔금 100,000,000원 2013. 12. 12.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3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중소기업은행에 115,163,00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102,520,000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30,660,000원의 각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 피고 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97,102,977원(= 대위변제금 498,996,684원 - 회수금 2,268,573원 + 확정손해금 1,694원 + 보전비용 373,17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96,728,111원(= 498,996,684원 - 2,268,5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4. 10.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14. 1. 7.경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 전부를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 그 매매대금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가지는

채권금액과 같은 액수였으며, 위 피고들 간에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기존 차용금채무의 면제로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요물성을 결하여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2 등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김선영

판사최민석

별지